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가정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 등을 강화하고, 가정폭력방지 관련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시설과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과 긴급전화 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에 ‘아동청소년 관련학’을 추가(안 제11조 별표 3, 안 제11조의2 별표 4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여성학”을 “여성학·아동청소년 관련학”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여성학”을 “여성학·아동청소년 관련학”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2호가목의 “여성학”을 “여성학·아동청소년 관련학”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여성학”을 “여성학·아동청소년 관련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11조 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가. ~ 다. (생략) 2.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서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u>여성학</u>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 라. (생략)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u>여성학</u>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4]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11조 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서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u>여성학·아동청소년 관련학</u>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 라. (생략)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u>여성학·아동청소년 관련학</u>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

3. 교육훈련과정 운영기준 가. ~ 사. (생 략) [별표 4의2]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 1.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생 략) 2.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u>여성학</u>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u>여성학</u>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다. ~ 마. (생 략) 3. 보수교육의 내용 (생 략)	는 사람 3. 교육훈련과정 운영기준 가. ~ 사. (현행과 같음) [별표 4의2]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 1.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현행과 같음) 2.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u>여성학·아동청소년 관련학</u>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u>여성학·아동청소년 관련학</u>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다. ~ 마. (생 략) 3. 보수교육의 내용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연 락 처	(02) 2100 - 6422